(재)서울디자인재단 · (주)새누
무인 물품보관함 운영서비스 협약서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주)새누(이하 새누)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DDP의 유료 물품보관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재단이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보관함을 새누가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은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제휴 내용)

1. 재단은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내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부지를 제공하고, 새누는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란 는 물품보관함의 정상 운영 상황 하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에 대해 새누가 운영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판매 계획(물품보관함 이용 요금, 결제수단, 방법 등)은 사전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시설 및 부품, 직원 교육은 새누에서 부담·진행 한다.

2. 새누는 물품보관함 운영 상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관리 책임을 진다.

3. 물품보관함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수입(이하 매출)중 물품보관함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재단으로 귀속된다.

① 물품보관함의 수익배분은 전체 매출중 재단 40%, 새누 60%로 한다.

② 기간과 상관없이 새누 초기투입비용 수익달성시 배분비율은 재단 50%, 새누 50%로 조정한다.

③ 판매채널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총괄적 관리는 새누가 진행하며, 매월 15일(해당 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이전에 전월의 '총 매출' 중 재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③ 물품보관함 이용객의 결제 취소, 변경등으로 인하여 '매출'에 변동이 발생하여 당월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익월 정산에 반영한다.

4. 새누는 전월의 '매출' 내역과 재단에 지급될 금액을 <u>매월 10일</u> 이전까지 재단에 서면 보고하며, '매출' 보고 외 재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물품보관함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업무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가 보고한다.

5. 새누는 물품보관함의 매출을 관리하는데 있어 내부적 부정·오류 방지 규정을 수립 하고, 재단에서 제2조 4항외 매출관련 자료를 불시에 요청할 경우 성실히 보고한다.

6. 물품보관함의 위치, 수량, 가격 변경·추가의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7. 새누는 물품보관함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재단에 제출한다.

제3조(협약기간)

1. 본 제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휴 협약 기간 만료 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협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4조(협약 내용의 변경)

제휴기간 중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희망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정일 15일 전까지 문서 통보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 및 새누의 운영계획(영업활동 불가 등)이 변경될 경우

2.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3. 양사가 협의한 제 2조의 업무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본 제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6조(비밀유지)

재단 및 새누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자료, 대상에 대한 정보 등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신의성실 의무)

1. 본 제휴 협약을 진행함에 있어 재단과 새누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새누는 본 운영 협약에 의해 물품보관함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한다.

제8조(손해배상)

본 제휴 협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분쟁해결)

본 제휴 협약 사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기타사항)

1. 본 운영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본 운영 협약서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양도·위임 할수 없다.
3. 본 운영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기타의 부속 문서는 본 제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효력)

본 협약은 재단과 새누의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협약 해지 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양사는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 .

(재)서울디자인재단	(주)새누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층	대륭테크노타운12차 810호
대표이사 최 경 란	대표이사 황 선 오

※ 판매 계획 (18년 기준)

○ 물품보관함 이용료

운영 시간	함크기(Cm) 가로×높이×깊이	보관 비용(원)	보관 시간	결제 수단	비 고
24시간	**소형** 50×30×60	1,000	2시간	현금 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2시간 초과시마다 각 보관비용 추가
	중형 50×60×60	2,000			
	대형 50×90×60	3,000			